

# 교무위원회 규정

제정 1997.01.03.  
개정 2004.11.01.  
개정 2009.02.06.  
개정 2012.07.02.  
개정 2013.11.06.  
개정 2013.11.06.  
개정 2019.01.30.  
개정 2019.04.04.  
개정 2020.02.10.  
개정 2020.08.13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기획처장, 학사운영처장, 입학관리처장, 취·창업 지원처장, 산학협력처(단)장, 행정지원처장, 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, 교육혁신원장, 학보사 주간, 미래전략위원회 추천 교수, 행정부서별 부처장 및 정책부장,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(LINC+) 육성사업단장, 학과장 등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된다.

**제3조(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(직무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회의의장이 된다.  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소집 및 심의)**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의장의 필요에 따라 교무위원회 이외의 인사에게 임석 발언을 허락할 수 있다.  
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1. 대학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
2. 입학 졸업에 관한 사항  
3. 시험 및 성적에 관한 사항  
4. <삭제>  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회의)** ① 교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교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

**제7조(재심)** 교무위원회는 총장(부재시 직무대행)의 요구에 따라 교수회의 자문 소청사항을 재심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 교무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의안별 주무 팀장이 된다.

**제9조(회의록)**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 명단을 첨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.